[별지 제7호 서식] <개정 2018.12.12., 2019. 8. 12., 2020.12.04., 2021.07.02., 2023.07.05.>

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

[ ] 휴 업 급 여
[ ] 상병보상연금 청 구 서

※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, 해당 신청란에 [✔]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7일

산 재 근로자

성 명	생년월일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

재해발생일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

수령 계좌

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? [ ] 예 [ ] 아니오

은행(증권사)명:

계좌번호: (예금주 :)

[ ] 보통계좌 [ ] 보험급여 전용계좌(희망지킴이-압류금지계좌)

청구 기간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

확인 사항

① 청구기간 중 취업(자영업 포함)한 사실이 있습니까? [ ] 취업함 [ ] 취업하지 못함

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? [ ] 예 [ ] 아니오

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,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? [ ] 예 [ ] 아니오

※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.

수령일자	수령금액	지급한 자	첨부서류
			합의서, 판결문, 영수증, 기타서류 등

※ **유의사항:** 위 확인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자동 지급 신청

2회차 지급분 부터(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)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? [ ] 예 [ ] 아니오

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 구 인 (서명 또는 인) ☎

대 리 인 (서명 또는 인) ☎

<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서>

본인은 (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)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를 통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의료기관 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)

[별지 제7호 서식] <뒷면><개정 2018.12.12., 2019.8.12., 2021.07.02., 2023.07.05.>

1 구비서류

● 휴업급여

1.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,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2.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3. 노무제공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(일용근로 제외)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, 연장수당 등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● 상병보상연금

1.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: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
2.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: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

2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

●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,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 ·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 ·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(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)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구기간 중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·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.

3 기타 서비스 안내

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휴업급여 · 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	입원환자 2회분 이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1회 최초의 청구로 자동지급이 되며,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. ※ 입원하다가 통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휴업급여 우선지급	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(보수)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(최저 휴업급여 보장액)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, 평균임금(보수) 산정 후 차액이 있다면 휴업급여 차액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.

스마트폰으로 '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'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앱 마켓에서 "TOUCH! 산재고용" 으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일상 복귀 지원	**재활스포츠 지원**	상병 및 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수영,헬스,요가 등 스포츠 비용 지원(최대 3개월)
	심리상담	산재근로자의 불안,우울,가족 및 대인관계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
	희망찾기프로그램	요양 중에 있는 산재근로자의 요양단계별(입원,통원)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심리안정 지원
	사회적응프로그램	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지원
직업 재활	**원직장복귀 지원**	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'재활상담, 소견서 무료발급 등' 의 서비스 제공 산재근로자(장해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)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'적응훈련(요양중에도 인정) 또는 재활운동' 을 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
	타직장복귀 지원	타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(장해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)에게 직업훈련 지원 및 공공·민간 취업지원 연계, 취업설명회,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

메타버스 상담실운영	**언제 어디서나 메타버스 가상상담실을 통한 상담 및 사회복귀지원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"내일찾기 메타서비스"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**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)

[별지 제8호 서식] <개정 2018.12.12., 2019.8.12., 2023.07.05.>

중 증 요 양 상 태 진 단 서

근로자성명		생년월일	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	재해발생일	년 월 일
상병부위 및 상병명					
요양 기간	. . . ~ . . .	( )일간[입원( )일 · 통원( )일]			
향후치료 예상기간	. . . ~ . . .	( )일간[입원( )일 · 통원( )일]			
상병경과 및 상병상태 (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)					
향후 예견되는 상병상태					

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명:

전화번호:

주소:

의료기관장명: (서명 또는 인)

주치의

산재관리의사 여부: [ ]산재관리의사 [ ]해당없음

의사면허번호: 호

전문과목: (전문의: 호)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자문의 소견	년 월 일 자문의사명: (서명 또는 인) 의사면허번호: 제 호

(210mm×297mm, 신문용지 54g/㎡)